

투자 자문 계약서

고객명 : _____ 님

엑스포넨셜자산운용(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710A호 (여의도동, CCMM빌딩)

Tel : 02-6958-6507 / Fax : 02-6958-6506

_____ (이하 “갑”이라 한다)과(와) **엑스포벤처자산운용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투자자문자산(이하 “계약자산”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서 “을”로부터 계약 기간 동안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받고자 다음과 같이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이 계약자산의 범위 내에서 투자자문자산을 투자함에 있어 필요한 소정의 투자자문을 “을”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로 투자자문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을에게 지불하는 것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투자대상자산) 을이 갑의 계약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그 투자대상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한다.

1. 한국거래소 상장 및 코스닥 등록 주식
2. 한국거래소 상장 및 코스닥 등록을 위하여 공개되는 주식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5 조 파생상품에 규정된 장내/외 파생상품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 조 증권에 규정된 각 증권
5. 단기대출
6. 금융기관예치
7. 부동산
8.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
9. 기타 갑과 을이 사전 합의한 투자자문자산

제3조(투자자문의 내용)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투자자문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계약자산에 대한 장·단기 투자전략 수립에 관한 조언
2. 계약자산의 종합적인 가치판단에 대한 조언
3. 계약자산의 종류, 종목, 수량 및 가격에 대한 조언
4. 계약자산매매의 구분, 방법 및 시기에 대한 조언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부대서비스

제4조(투자자문의 방법)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투자자문의 방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을은 갑의 계약자산의 내용이나 규모 및 투자방침에 따라 적절한 Portfolio를 제공한다.
2. 을은 갑에게 전화, 구술, 문서 및 기타의 방법으로 투자자문에 응한다.

제5조(투자자문수수료) 갑은 을이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대가로서 다음과 같이 수수료를 지급한다.

1. 수수료율

자문 형태	수수료율
계약자산 금액이 정해진 경우	1% (연간)
계약자산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자문 계약 건 당 금액 협의

<기 타> 수수료율 및 수수료 금액은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2. 수수료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

투자자문수수료는 계약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당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제6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1. 갑은 본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 성명이나 명칭, 연락처, 기타 계약상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을은 갑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에 의하여 그 계약의 해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며 계약의 해지는 갑이 해지한다는 뜻의 서면을 발송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을은 계약기간의 전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당해 계약기간의 총 일수(해지시에 당해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확정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365일로 본다)로 나눈 금액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해지시까지의 일수를 곱한 금액만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3. 갑과 을은 중도해지를 원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계약상대방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해지한다는 뜻의 서면을 발송한 때부터 1개월 되는 날과 해지를 원하는 날 중 늦게 도래하는 때에 발생하며 투자자문수수료는 제2항에 준하여 정산한다.

제7조(비밀유지)

1.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갑의 계약자산의 내용 및 관리상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2. 갑은 을이 제공한 투자자문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8조(을의 제한사항) ①을 또는 그 임직원은 투자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갑으로부터 현금 또는 투자자문자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갑에게 현금 또는 투자자문자산을 대여하거나 갑에 대한 제3자의 현금 또는 투자자문자산의 대어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투자자문자산의 투자에 관하여 갑과 일정한 이익의 보장 또는 이익의 분할을 약속하거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4. 특정 투자자문자산에 관하여 조언을 받는 고객의 매매에 의한 당해 투자자문자산의 가격변동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당해 고객 외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정당한 근거 없이 조언을 하는

행위

5. 근거 없이 허위의 사실 및 그 밖의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6. 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투자자문업무 또는 투자일임업무를 행하게 하는 행위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투자자문자산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규정된 행위

제9조(계약자산의 운용책임 및 손익의 귀속)

을이 제공하는 투자자문은 계약자산의 운용에 대한 갑의 행위를 구속하지 아니하며 그 운용은 갑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고 그 운용결과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10조(계약의 종료) 이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갑 또는 을로부터 계약종료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재계약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계약의 내용) 갑과 을이 합의한 계약 세부조건은 <별지1>과 같다.

제12조(투자자문담당자의 정의) ① "투자자문담당자"라 함은 투자자문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로 <별지1>에 명시된 임직원을 말한다.

②을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투자자문담당자 이외의 을의 직원에게 투자자문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문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투자자문담당자의 선정과 변경) ①을은 갑에 대한 투자자문담당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갑의 의견 및 계약자산내용과 규모 등 사전 조사된 갑에 대한 사항을 고려 하여야 한다.

②을이 갑에 대한 투자자문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갑"과 협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즉시 "갑"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신의성실의무) 을은 갑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조문의 해석상 이의나 고객과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반상관례에 따른다.

제16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을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 년 월 일

“갑” 성 명 : _____ (서명 또는인)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 _____

주 소 : _____

“을” 법 인 명 : 엑스포비즈니스자산운용(주)

대 표 이 사 : 김 기 태 (서명 또는인)

사업자등록번호 : 859-87-00567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101, 710A호 (여의도동, CCMM빌딩)